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06.30)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2013)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사건번호 2018-51

엘리엇 어소시엣 엘.피. (미국) (ELLIOTT ASSOCIATES, L.P. (U.S.A.))
(이하 “청구인”)

대한민국
(이하 “피청구국”)
(“청구인” 및 “피청구국”의 집합은 “당사자들”로 칭한다.)

절차 명령 제 24 호

중재판정부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Mr. Oscar M. Garibaldi

Mr. J. Christopher Thomas KC

사무국

상설중재재판소

2026 년 7 월 1 일

절차 명령 제 22 호에 따라 환송 중재절차에서의 심리는 2026 년 7 월 27 일부터 28 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었으며, 2026 년 7 월 29 일은 예비일로 지정된 바;

2026 년 6 월 22 일 중재판정부는 심리의 운영에 관한 제안을 포함한 절차 명령 초안을 당사자들에게 송부하고, 당사자들에게 그 초안에 기재된 사항들에 관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 직접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해당 명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2026 년 6 월 30 일 당사자들은 합의된 명령 초안을 제출한 바,

본 절차 명령은 아래에 명시된 절차적 사항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인 바;

이에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명한다.

1. 심리 장소 및 참석자

- 1.1 심리는 미합중국 워싱턴 D.C. 코네티컷 애비뉴 N.W. 1225 번지에 소재한 세계은행 C 빌딩 3 층 회의실 C 3-100 에서 대면으로 개최한다.
- 1.2 상설중재재판소는 원격 참석이 필요한 심리 참석자들의 참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1.3 2026 년 6 월 29 일까지 각 당사자는 자신을 대표하여 심리에 참석할 전체 참석자 명단을 중재판정부, 상설중재재판소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고지한다. 해당 명단에는 각 참석자의 성명, 본 사건에서의 역할(예: 대리인, 당사자 대표 등) 및 각 참석자가 심리에 직접 또는 원격으로 참석하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당사자가 위 날짜 이후 참석자 명단을 보완하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설중재재판소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속히 고지한다.

2. 심리 일정 및 시간 할당

- 2.1 잠정 심리 일정을 본 명령의 부속서로 첨부한다. 심리 일정은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심리 중에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2.2 심리 일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사자들은 심리 제 1 일 종료 시 중재판정부의 질문을 받기를 희망한다.
- 2.3 각 당사자에게는 합리적인 유연성 하에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동등한 시간이 부여된다.
- 2.4 중재판정부의 질문, 이에 대한 답변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적 개입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 당사자에게 할당된 시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 2.5 심리 중 제기되는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 당사자에게 할당된 시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 2.6 상설중재재판소는 중재판정부의 감독하에 체크클록 방식으로 시간을 기록하고, 각 심리일 종료 시 및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 및 중재판정부에 잔여 시간을 고지한다.
- 2.7 심리 시간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심리시간 외에 할당된 시간의 균등을 보장하고 상호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당사자들 간에 해결하고,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중재판정부에 회부한다. 당사자들 간에 해결되지 않은 시간 할당에 관한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3. 심리 자료

- 3.1 절차 명령 제 1 호 제 9.4 항에 따라, 새로운 서증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신청 및 그 신청에 관하여 상대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거쳐)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에서 제시될 수 없다.
- 3.2 절차 명령 제 1 호 제 9.4 항에 따라, 당사자는 심리에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및 시연용 증거물을 사용할 수 있다.
- 3.3 심리 중 제시될 시연용 증거물(예컨대, 기록상 존재하나 해당 형식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취합한 그래프, 도표 등)은 (i) 해당 정보가 도출된 기록상의 출처를 명시하고, (ii) 사용 예정일 전날 워싱턴 D.C. 기준 자정까지 상대 당사자, 중재판정부 구성원, 상설중재재판소 및 속기사에게 이메일로 배포되어야 한다.
- 3.4 위 시연용 증거물에 관한 규칙을 전제로, 심리 중 제시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사용 최소 15 분 전까지 전자본 및 인쇄본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3.5 오푸스 2 는 심리기간 동안 증거물의 전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심리 번들

- 4.1 오푸스 2 는 기록 전체를 포함한 전자 심리 번들을 제공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전체 사건 기록과 하이퍼링크된 색인을 담은 USB 를 준비하여 중재판정부 구성원들이 지정한 시점에 이를 제공한다.

5. 언어

- 5.1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심리는 영어로만 진행되며 한국어 통역은 제공되지 아니한다.

6. 녹음 및 속기록

- 6.1 상설중재재판소는 심리가 녹음되도록 조치한다.
- 6.2 오푸스 2 는 속기 및 실시간 영문 전사를 제공한다. 오푸스 2 는 심리 중 모든 심리 참석자가 실시간 속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7. 투명성

- 7.1 협정 제 11.21 조 제 2 항에 따라, 상설중재재판소는 심리의 지연 중계가 공개 시청실에 송출되도록 조치하며, (협정 제 11.28 조 및 절차 명령 제 1 호 제 10.4 항에서 정의하는) 보호정보로 지정된 정보가 논의될 때 어느 한 당사자가 주 심리실에서의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달리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설중재재판소에 요청하는 경우, 해당 중계를 중단한다. 심리 중계 중단 시 상설중재재판소는 주 심리실에서의 절차에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7.2 심리 종료 후, 상설중재재판소는 심리 속기록을 상설중재재판소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게시에 앞서, 상설중재재판소는 당사자들이 보호정보의 삭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해당 속기록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한다.

중재지: 영국 런던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중재판정부 대표

부속서: 심리 일정

제 1 일: 2026 년 7 월 27 일 월요일

시간 (동부시간)	소요시간	절차단계
9:30-9:45	15 분	준비 / 예비사안
9:45-11:15	1.5 시간	환송 쟁점에 관한 청구인의 모두진술
11:15-11:30	15 분	휴정
11:30-13:00	1.5 시간	환송 쟁점에 관한 청구인의 모두진술 (계속)
13:00-14:00	1 시간	점심
14:00-15:30	1.5 시간	환송 쟁점에 관한 피청구국의 모두진술
15:30-15:45	15 분	휴정
15:45-17:15	1.5 시간	환송 쟁점에 관한 피청구국의 모두진술 (계속)
17:15-17:30	15 분	기타사안 / 중재판정부 질문 (있는 경우)

제 2 일: 2026 년 7 월 28 일 화요일

시간 (동부시간)	소요시간	절차단계
10:00-11.30	1.5 시간	청구인의 반박진술 (심리 제 1 일 중 또는 종료 시 중재판정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 포함)
11:30-13:00	1.5 시간	점심
13:00-14:30	1.5 시간	피청구국의 반박진술 (심리 제 1 일 중 또는 종료 시 중재판정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 포함)
14:30 이후	추후 확정	중재판정부의 잔여 질문 및 답변 / 기타 사안